

꼭 알아야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 사항

-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승인자 편 -





꼭 알아두세요!

병의원, 약국 등에서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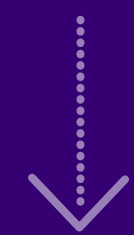
2019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등록 후 전산보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는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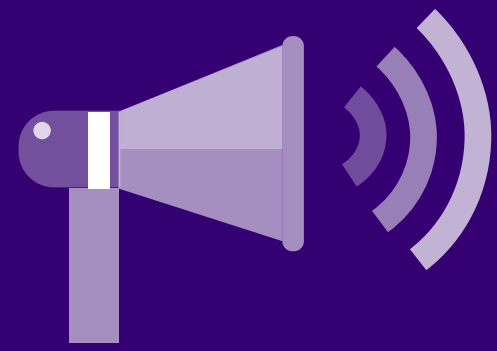
*재고 등록 방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co.kr)' 접속 ▶ '자료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5.18) 초기,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에 한하여
제도시행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보고를 시작하지 않고
종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조제, 투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2019년 3월 31일까지 일자를 정하여**
마약류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등록한 후부터는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의 입력실수 혹은 오류의 경우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변경보고' 합니다.

변경보고 기한(종전)

최초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



변경보고 기한(현재)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처방 내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처방전에 따라 '변경보고'합니다.

✓ 변경처방에 따른 변경보고는 변경기한 이후라도
가능합니다.

✓ 취급일자를 새로운 처방전 발행일자로 수정하여
보고합니다.

변경보고 기한 이후라도 처방내용이 취소된 경우

✓ 취소처방전에 따라 '취소보고'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19년 6월 30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9. 6. 30까지	'19. 7. 1부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짓 보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혀 미보고	행정처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 미보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고항목 오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고기한 초과	계도 후 행정처분 (미이행시)	행정처분

또한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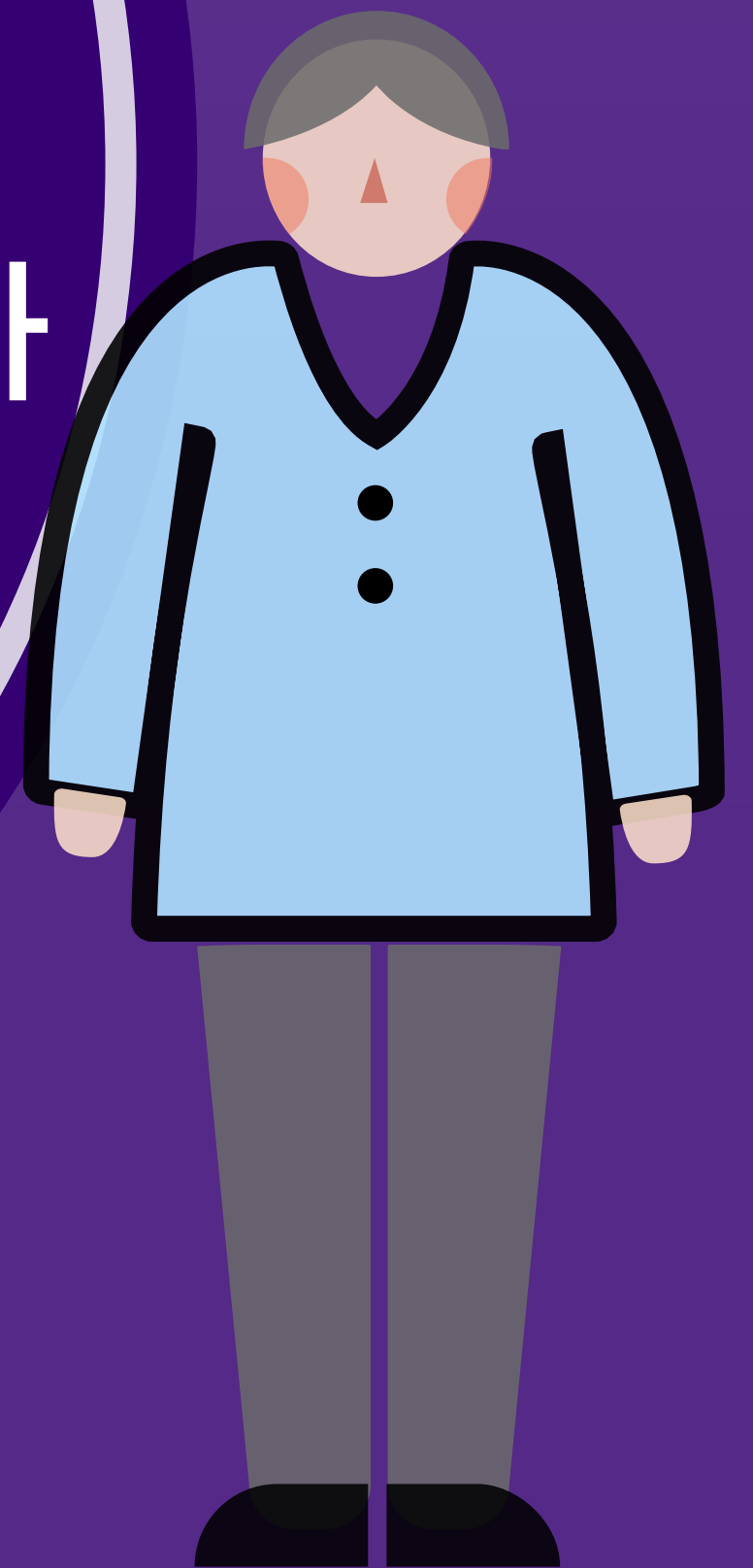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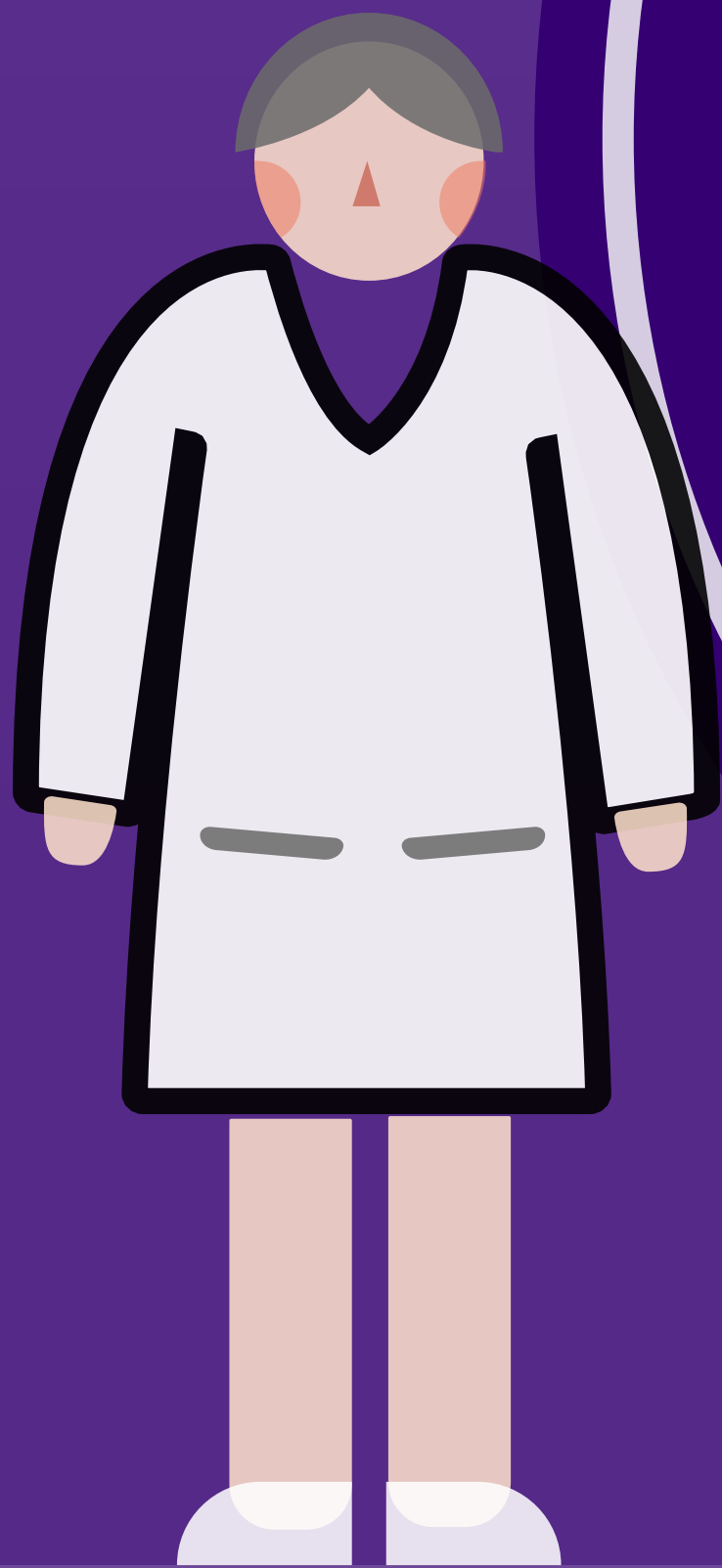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 프로포폴)의
‘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유효기한)’을
입력실수 하거나 미입력한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청정한 대한민국,
마약류취급자와 취급승인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상담센터 1670-6721